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435

발의연월일: 2022. 4. 28.

발 의 자:최인호·위성곤·이원택

서영교 • 노웅래 • 한준호

박상혁 • 김병기 • 서동용

이학영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무역항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관리청이 수상구역 등에 있는 선박을 관리청이 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태풍 상륙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박대피협의체'를 구성하여 선박에 대한 피항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그로 인한 선박 및 항만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음.

한편 무역항으로 반입되는 위험물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물 관련 정보 를 교차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가 없어 필요한 자료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관련 근거규정을 각각 신설함으로써 선박의 입항·출항 등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선박에 대한 피항명령 및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벌금부과를 규정함(안 제8조의2 및 제56조제6호의2 각각 신설).
- 나. 위험물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선박의 피항명령) ① 관리청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다른 구역으로 피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관리청은 접안 또는 정박 금지구역의 설정 등 제1항에 따른 피항명령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있다.
- 1. 「해운법」에 따른 해운업자
- 2.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5조의2(위험물 관련 자료제공의 요청) ① 관리청은 위험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제공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8조의2(선박의 피항명령) ① 관
	리청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무역항의 수
	<u>상구역등에 있는 선박에 대하</u>
	여 다른 구역으로 피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접안 또는 정박
	금지구역의 설정 등 제1항에
	따른 피항명령에 필요한 사항
	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한 협의
	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해운법」에 따른 해운업자
	2.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u>는 자</u>
<u><신 설></u>	제35조의2(위험물 관련 자료제공
	의 요청) ① 관리청은 위험물
	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56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신 설>

7. ~ 18. (생략)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
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ユ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 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제공방 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한다.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피 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 18. (현행과 같음)